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병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058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균유휴지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김병주의원안)	3

I. 개요

1. 김병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058호)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병주의원 등 16인

(2) 발 의 일 : 2026. 2. 26.

(3) 회 부 일 : 2026. 2.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이하 “군유휴지등”이라 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과거 군부대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지연 등 각종 제약을 받았고, 최근에는 국가 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문제를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유휴지등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 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군유희지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김병주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군유희지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 신설(안 제121조의36 신설) ○ 대상: 「군유희지 및 군유희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3조에 따른 군유희지등에 제조업 등 감면대상사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 이전 제외)하는 기업 ○ 감면대상: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감면율: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서비스업 2,000만원) ○ 사후관리: 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② 폐업·해산 또는 감면대상사업장을 군유희지등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추징 ○ 적용기한: 2029. 12. 31. ○ 최저한세 적용(단, 100% 감면 시 적용 배제)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군유희지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 <신 설>	□ 군유희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121조의37 신설) ○ 대상: 수도권(인구감소지역, 군유희지등, 접경지역 제외)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군유희지등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 ○ 과세특례

현 행	개정안
	- 법인: 양도차익상당액 익금불산입(군유휴지등에 있는 신규사업용부동산 처분 시 익금산입) -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규사업용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요건: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 ○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과세특례 적용 종료 ① 3년 이내 사업 폐지 또는 법인 해산 ② 사업용 부동산을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적용기한: 2029. 12. 31.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에 있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김병주의원안 2026. 2. 25. 발의(의안번호 17058)

□ 개정안은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군유휴지 지원법안”)¹⁾」의 의결을 전제로, 「군유휴지 지원법안」에 따른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이하 “군유휴지 등”)²⁾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1)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058

2)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군유휴지”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아니할 부지를 말한다.

3. “군유휴지주변지역”이란 군유휴지가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군유휴지가 소재한 읍·면·동에 인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유휴지는 제외한다.

수도권(인구감소지역, 군유휴지등, 접경지역 제외)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종전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과세이연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 국방부는 병력 절감에 따라 군구조의 개편과 군부대 재배치를 통한 군집화와 거점화를 추진 중으로, 지상작전사령부의 창설과 함께 8개 군단을 6개 군단으로, 39개 사단을 32개 사단으로 감축하였음.

이에 따라 경기도의 (구)제20기계화보병사단, (구)제26기계화보병사단, 제28보병사단, 제30기계화보병사단과 강원도의 (구)제2보병사단, 제23보병사단, 제27보병사단 등이 해체되었음.

[해체 대상 군부대 현황]

(단위: %)

지역		부대	해체연도
경기도	포천시	제6군단 사령부	2022년
	양평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2019년
	양주시	제26기계화보병사단	2018년
	동두천시	제28보병사단	2025년
	고양시	제30기계화보병사단	2020년
강원도	양양군	제8군단 사령부	2023년
	양구군	제2보병사단	2019년
	삼척시	제23보병사단	2021년
	화천군	제27보병사단	2022년

자료: 국방부

- 현재 군유휴지 총면적은 약 790만 제곱미터에 달하고, 이 중 경기도(53.1%)와 강원도(22.7%)가 대부분을 차지함.

[군유휴지 면적]

(단위: m²)

지역	군유휴지 면적
경기도	4,208,044
강원도	1,798,111
전라북도	53,213
광주광역시	5,991
충청북도	558,727
경상북도	423,734
충청남도	131,101
경상남도	81,490
전라남도	307,592
부산광역시	6,677
서울특별시	218,594
인천광역시	58,592
대전광역시	32,481
울산광역시	2,822
대구광역시	25,555
제주특별자치도	12,641
세종특별자치시	5,687
총계	7,931,052

자료: 국방부

-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군유휴지등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군유휴지 지원법안」이 발의되었고, 해당 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군유휴지등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개정안이 함께 발의되었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음.

첫째, 「군유�휴지 지원법안」은 군유�휴지등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³⁾,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각종 세법 및 일부 열거된 법률로만 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군유�휴지등에 대한 조세 특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함.⁴⁾

3)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9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유�휴지등에 회사를 설립하는 자, 군유�휴지등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③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 인·허가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사용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 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

둘째, 군유휴지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고용 활성화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으로 기존에 군부대가 위치하던 지역으로부터 인구 감소, 지역상권 침체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경기 북부지역과 강원도 등 접경지역⁵⁾에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 접경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 대비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세제지원을 통한 민간기업 유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접경지역 재정자립도 추이]

(단위: %)

지 역	2022	2023	2024	최근 3년 평균
경기도	61.6	60.5	55.1	59.1
김포시	32.8	37.2	33.8	34.6
파주시	28.9	30.0	29.7	29.5
연천군	14.5	15.0	15.3	14.9
고양시	32.8	32.7	33.7	33.1
양주시	24.6	26.7	26.2	25.8
동두천시	13.1	13.9	14.0	13.7
포천시	22.6	24.6	22.8	23.3
가평군	16.8	20.5	18.3	18.5

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5) 강화군, 옹진군,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춘천시,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24.7	25.4	25.2	25.1
철원군	8.6	9.9	12.1	10.2
화천군	6.8	7.0	7.6	7.1
양구군	9.5	9.6	8.5	9.2
인제군	8.0	8.1	8.8	8.3
고성군	7.8	8.3	10.1	8.7
춘천시	19.3	20.1	18.9	19.4
속초시	20.1	17.5	18.4	18.7
인천광역시	51.9	48.8	45.7	48.8
강화군	12.1	12.7	11.4	12.1
옹진군	9.3	11.1	11.1	10.5

주: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함
 자료: 행정안전부

셋째, 군부대 등 국방 안보 관련 시설의 설치에 따른 혜택은 전국민이 누린 반면, 군사시설 소재 지역은 개발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았던 점을 감안할 때 군유휴지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 다만, 군유휴지등의 위치, 면적, 부지 내 각종 규제 해제 여부 등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군유휴지 지원법안」의 의결 및 기업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된 이후에 조세특례 도입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군유휴지 지원법안」 및 동 개정안에 따르면 군유휴지 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할 때에도 조세특례를 적용하게 되는데,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조세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54